#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34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문대림・임호선・이원택

주철현 • 윤준병 • 박용갑

송옥주 · 임오경 · 신정훈

김영호 • 허종식 • 서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 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 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3조제4항 전단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
|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면) ①             |
|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                  |
| 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                  |
|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                  |
|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                  |
| 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                  |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                  |
|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                  |
|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                  |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                  |
|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                  |
|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                  |
| 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                  |
|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                  |
|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                  |
|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                  |
|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u>20</u>  | <u>2030년 12</u>  |
| <u>25년 12월 31일</u> 까지 증여하는 | 월 31일            |

|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                    |
|-------------------------|--------------------|
|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                    |
|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
|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생      |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       | 4                  |
| 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u>1억원</u> | 2억원-               |
| (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        |                    |
|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                    |
|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                    |
|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         |                    |
| 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        |                    |
| 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         |                    |
| 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       |                    |
| 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                    |
| 계산하다.                   |                    |